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기업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사용한 제휴사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데 따르는 은행과 이용기업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Open API"란 은행이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한 API를 말합니다.
- 2. "기업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 내부의 서비스 및 데이터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기업 Open API 플랫폼을 통하여 은행과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외부 제휴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기업 Open API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 설치한 API 중 계시스템과 제휴사의 처리시스템을 연결하여 은행 및 제휴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4. "기업 Open API 포털" (이하 "포털")이란 "기업 Open API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서비스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용기업 전용 페이지를 통해 은행과의 서비스 약정 및 약정 이후 서비스 이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의미합니다.
- 5. "제휴사"란 은행과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Open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서비스 또는 제휴사 프로그램을 개발, 테스트하여 이용기업에게 제공하는 업체로 포털에서 제휴사로 조회되는 업체에 한정 합니다.
- 6. "제휴사 프로그램"이란 제휴사가 이용기업의 회계, 물류, 재고관리 등 기업 경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Open API를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컨설팅 포함) 등을 말합니다.

- 7. "이용기업"이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고객(이하 '기업고객')으로 제휴사가 기업 Open API를 사용하여 개발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과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 약정을 체결한 기업고객을 말합니다.
- 8. "사용자"란 이용기업의 Master인증서를 제출한 직원(이하 "Master사용자")과 Master사용자 가 포털에 사용자 권한을 등록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대표자와 직원(이하 "사용자")을 말합니다.
- 9. "사용자 권한"이란 Master사용자가 포털에서 이용기업 사용자에게 부여한 기업 Open API 호출 권한으로 "조회" 권한과 "조회/이체" 권한으로 분류합니다.
- 10. "토큰"이란 이용기업이 제휴사 프로그램에 기업인터넷뱅킹 ID/Password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 Open API 서비스에 자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정값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 11. "간편비밀번호"란 조회/이체 권한의 사용자가 제휴사의 서비스 또는 제휴사 프로그램에서 이용기업 명의의 이체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Master사용자가 발급 신청한 6자리 비밀번호로 이루어진 접근 매체를 의미합니다. 단 6자리 비밀번호는 해당 사용자가 휴대폰 본인인증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2.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기업 및 거래내용의 진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기업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바. 간편비밀번호
- 13.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이용기업의 금융거래사 실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기업 Open API 서비스의 내용)



- ① 기업 Open API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조회서비스(국민은행 정보조회, 타은행 정보조회, 카드정보조회, 거래처 정보조회, 매입매출조회 등)
 - 2. 이체서비스(일반이체, 대량이체, 급여이체, 오픈뱅킹 잔액모으기, 자동이체등록 등)
 - 3. 기타서비스(국민은행 영업점 조회, 무역업무 조회 등)
- ② 포털이 제공하는 이용기업 전용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가입
 - 2. 이용제휴사 관리 (이용제휴사 추가, 이용제휴사 해제)
 - 3. 사용자권한관리
 - 4. 간편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발급현황, 간편비밀번호 설정)
 - 5. 이용내역조회
 - 6. 서비스해지
- ③ 은행이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제휴사의 계약관계에 따라 각 제휴사 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기업 Open API의 종류 및 포털의 이용기업 전용 서비스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변경, 삭제하는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은행의 영업점과 홈페이지 및 포털에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기업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과 홈페이지 및 포털에 1개월간 게시하는 동시에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은행의



영업점과 홈페이지 및 포털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이 제2항의 게시 및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업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 및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기업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 및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이용기업이 요구할 경우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처리 원칙 및 의무)

- ① 이용기업과 은행은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용기업이 제휴사의 제휴사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하여 은행에서 처리한 서비스에 대하여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수신거래기본약관, 대상 거래 관련 약관,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규약, 기타 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② 은행은 약관에 동의한 이용기업에게 제휴사를 통해서 기업 Open API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며,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① 이용기업은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사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Master사용자가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약정 및 제휴사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 ② Master사용자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대표자 또는 직원을 1인 이상 포털 또는 제휴 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로 등록하고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하는 이용기업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사용자명
- 2. 생년월일
- 3. 휴대폰번호
- ③ 이용기업은 사용자 등록 시 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저장, 제공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이행하고 수집된 관련 사항 등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④ 사용자는 기업 Open API 호출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기업이 등록한 개인정보와 일치 여부를 본인인증을 통하여 검증한 후 제휴사 프로그램을 통해 토큰을 부여받습니다.
- ⑤ 이용기업은 사용자 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관리 소홀, 부정 사용, 제3자 사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업에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 ① 은행은 사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매체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기업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와 접근매체의 관리는 이용기업의 책임 아래 관리해야 합니다.
- ③ 이용기업은 제휴사에게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동의일로부터 1년간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을 일괄통보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기업 Open API를 통하여 금융거래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의 유효기간은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동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정보제공이 중단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포털에서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을 일괄통보 받는 것에 대해 재동의를 하여야만 기업 Open API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계속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용기업이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이용기업이 제휴사 프로 그램을 통해 본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으로만 이용기업이 은행에 요청한 본인의 금융 거래사실, 잔액, 거래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
- ⑤ 은행은 이용기업이 제휴사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중단에 대한 별도의 서면 통지 또는 포털에서 이용제휴사 해제를 하지 않으면 동의 유효기간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며 이용기업이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일괄



통보합니다.

⑥ 본 서비스는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Open API를 사용하여 제휴사가 자신의 제휴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기업에게 계좌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은 제휴사 프로그램에서 이용기업에게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이용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조회(잔액조회 포함) 및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서비스 약정 및 이용에 따르는 이용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건별 이체수수료는 기업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이용수수료)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제휴사의 제휴사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이용기업과 제휴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릅니다.
- ③ 수수료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제4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별 이용가능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업인터넷뱅킹의 서비스별 이용시간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포털을 통해 안내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합니다.
-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은행은 타 금융기관과 관련된 API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포털을 통해 안내합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조치 후 사후 포털에 게시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ammykpsaccom 업에게 통지합

유와 내용을 이용기업이 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에 이용기업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약정기간)

- ① 본 서비스의 약정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은행은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한 전자우편주소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일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약정만료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서비스 약정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서비스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제①항의 약정기간 자동연장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일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약정만료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서비스 약정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서비스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업에게 통지하고,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휴사와 은행의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해지로 제휴사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기업이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서비스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은행은 이용기업이 본 약관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기업이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업이 해지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용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예약이체 건이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약 이체 건의 완료 후까지 해지 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기밀유지)

- ① 이용기업과 은행은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상호정보교환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정보를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이용기업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은행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이용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아나합니다.
 - 1. 이용기업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이용기업이 권한 없이 이용기업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기업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기업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기업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6. 이용기업의 내부적 환경에 기인한 접속장애 및 오류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래가 안 된 경우.
- 7.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기업에서 은행이 정한 방식 이외의 전산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처리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14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본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련 법규를 따르고 관련법 규가 없으면 관습 및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22. 9. 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12,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